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33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국산 소재 · 부품 · 장비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재관의원안)	3
2.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11
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 요	11
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이재관 의원안)	23

I. 개요

1.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73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디스플레이기술에 대한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기술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부품·장비의 활용 비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제도를 운영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제를 받

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제25조의9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안번호 제15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국산 소재·부품·장비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재관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국산 소재·부품·장비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9) ○ 세액공제 대상: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는 비용 ○ 세액공제율: 5%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중복지원 배제,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최저한세, 이월공제 적용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세액공제 관련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국산장비 구매 비용부터 적용

* 이재관의원안 2025. 12. 30. 발의(의안번호 15733)

□ 개정안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의원안, 의안번호 제15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¹⁾

-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른 디스플레이기술은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현해 주는 장치로서 영상표시장치와 입력장치 등 관련 장치를 포함) 제품 및 그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응용 등과 연관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의미함.²⁾
- 우리나라는 과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CD를 중심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2021년에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음. 이에 따

1)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 이 법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를 둠(안 제8조).
-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 바. 디스플레이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 사. 조세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규제개선 등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아.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지원, 디스플레이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스플레이기술”이란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현해 주는 장치로서 영상표시장치와 입력장치 등 관련 장치를 포함한다) 제품 및 그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응용 등과 연관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디스플레이산업”이란 디스플레이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디스플레이사업자”란 디스플레이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디스플레이특구”란 디스플레이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LCD 분야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준 이후 고부가 분야인 OLED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였음. 현재는 우리나라가 OLED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나, 중국이 OLED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임.

2024년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점유율은 33.1%로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음. OLED 분야 2024년 점유율은 67.2%로 세계 1위이나, 전년대비 6.4%p 감소한 수준임.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단위: %)

국적	전체		OLED		LCD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한국	33.2	33.1	73.6	67.2	10.1	10.0
중국	48.1	50.8	25.7	33.3	60.9	63.4
대만	16.7	14.6	0.1	0.5	26.2	24.4
일본	1.7	1.1	0.6	0.0	2.3	1.6
기타	0.4	0.4	-	0.0	0.5	0.6

주) 시장점유율은 금액 기준임

자료: KIET,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OLED 응용분야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기존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을 넘어, TV·웨어러블 디바이스·자동차·VR 등 다양한 영역에서 OLED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기술발전과 생산비용 절감으로 OLED의 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워치·노트북·차량용 디스플레이·TV 등에서 OLED 채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임.³⁾

2025년 3분기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매출은 경쟁심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반면, 중국 기업인 BOE의 매출은 자국 수요 등을 기반으로 전년동기 대비 6% 증가하였음.⁴⁾

현재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OLED 분야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을 유도하고 디스플레이 소부장의 국산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노광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FAB(Fabrication Facility)⁵⁾ 설비가 국산화되었으며, 모듈용 설비와 물류 설비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반도체 기반의 전자산업 역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3) KOTRA, 중국 OLED 패널 시장 동향, 2025.5.

4) 한국수출입은행, ICT산업 동향 및 전망(2025년 4분기)

5)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의미함.

로 비교적 경쟁 우위에 있으나,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필수적인 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액정재료, Gas, Chemical, OLED 재료, FMM(Fine Metal Mask)⁶⁾ 등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비중은 0~50%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원천 특허와 품질 수준,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 일본, 독일, 중국,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임. 또한 Driver IC(Integrated Circuit)⁷⁾, 수동 소자 등은 국산 비중이 30~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대만이나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⁸⁾

개정안과 같이 국산장비 구매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면, 국내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확대되어 소부장 산업의 성장과 디스플레이 산업 소부장의 국산화율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6) 발광층을 구축하기 위한 증착 공정에서 OLED 패널 위에 붙이는 마스크의 한 종류로서, 증착할 발광 유기물이 마스크를 통과해 기판 위의 원하는 위치에 증착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함

7) OLED, LCD 등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픽셀을 구동하는 데에 쓰이는 작은 반도체 칩임

8) KISTEP,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과 미래전략, 2023. 6.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으로서 연구개발과 투자에 있어 이미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과급효과가 큰 기술⁹⁾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5%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또한, 동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에 대해 15~2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25~35%를 공제받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은 일반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들에 비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시 더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됨.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소재·부품·장비 구매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음.

둘째, 디스플레이 산업 기업이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 또는 시설투자를 위해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R&D 세액공제 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중복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산장비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구매의 목적 및 구매한 국산장비의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구매의 목적과 상관없이 국산장비 구매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면 연구개발 또는 시설투자를 위한 국산장비 구매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동시에 동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제도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는 중복 세제지원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¹⁰⁾

문 의 처
02)6788-5155

10)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구매자 지원에 따른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우려되고, 다양한 첨단제품 중 디스플레이 구매에 대해서만 세금지원시 타 산업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며, 유사 지원 요구 지속 발생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20%,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¹¹⁾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5%를 공제하고, 중소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¹²⁾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5%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일반) 또는 3년(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임대용 자산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7.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9%·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5년 3월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5%p 상향된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당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되었음¹³⁾.

13) 바이오의약품: 2023년 12월 세법개정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2025년 3월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5. 11. 28.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Bipolar-CMOS-DMOS), UHV(Ultra High Voltage),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 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분야	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Epi)·전사·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분야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5. 11. 28. 개정)

□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조세지출은 모두 2024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2024년 기업 결손 발생으로 공제액이 이월된 것에 기인함. 다만, 기업 실적 회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이월 등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다시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¹⁴⁾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3년 4조 6,302억원에서 2024년 2조 9,57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5	951	99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0	40,522	42,964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41,473	43,954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14)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3년 2조 799억원에서 2024년 1조 7,69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477	1,50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424	24,204	28,571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693	25,681	30,076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163개가 1조 3,398억 3,2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584개가 1조 5,161억 3,200만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073	16,914	1	0
20억원 이하	5,980	47,225	3	98
50억원 이하	11,292	172,356	8	218
100억원 이하	8,110	220,769	15	424
200억원 이하	5,437	251,052	40	2,444
300억원 이하	2,052	153,812	46	2,526
500억원 이하	1,754	182,008	76	6,914
1,000억원 이하	1,173	199,823	164	24,890
5,000억원 이하	292	95,873	846	264,524
5,000억원 초과	0	0	385	1,214,094
합계	40,163	1,339,832	1,584	1,516,132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10,375개가 4,484억 5,4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899개가 1조 1,036억 2,000만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223	2,212	4	166
20억원 이하	1,094	4,481	2	27
50억원 이하	1,979	17,187	11	258
100억원 이하	1,717	34,593	34	715
200억원 이하	1,724	64,686	70	2,733
300억원 이하	817	51,818	69	3,603
500억원 이하	908	89,515	126	7,554
1,000억원 이하	708	115,518	241	22,376
5,000억원 이하	205	68,443	899	230,499
5,000억원 초과	0	0	443	835,687
합계	10,375	448,454	1,899	1,103,620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이재관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세액공제 이월공제(제144조) ○ 내용: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대상: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 공제순서: 이월공제금액을 해당연도 발생 공제액보다 먼저 공제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 10년 연장 ○ 내용: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단,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년간 이월공제 허용) - 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순서: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

* 이재관의원안 2025. 12. 30. 발의(의안번호 15733)

☐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이월하여 공제

받도록 하는 것임.

당초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제도별로 5년, 7년, 또는 10년으로 차등화되어 있었는데,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였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대규모 R&D 또는 설비 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0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이 R&D 및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을 제공하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주요국들은 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장기간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해외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영국은 R&D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에 제한이 없고, 미국은 2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됨.¹⁵⁾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이 늘어나면 개정 전에는 이월공제 기간(10년)이 지나 세액이 공제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이 늘어나고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2021. 12.

또한,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이월공제 기간 연장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발생한 이후에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⁶⁾

문 의 처
02)6788-5154

16) 재정경제부도 동일한 입장임.